



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「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 개정안 행정예고

-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에 따른 전략물자 추가 -
- 러시아, 벨라루스 상황허가 면제제도 개선 -

산업통상자원부(이하 산업부)는 12.6.(금) 「제36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」(이하 고시) 개정안을 행정예고('24.12.6.(금) ~ 12.26.(목))하였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국제수출통제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21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. 지정 대상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양자컴퓨터, 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이다. 이를 통해 산업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② 아울러, 그간 對러 상황허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한다. 미국 등 주요국 제도를 참고하여 인도주의적 성격의 對러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서는 상황허가 면제*를 허용할 예정이다.

* 다만, 해당 수출자는 對러 상황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에 따른 '사전신고서' 제출 필요

동 고시(안)은 개정 절차를 밟은 후 '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,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데스크(☎ 02-6000-6498, 6499)를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무역안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예 (044-203-4830)
		담당자	사무관	서현우 (044-203-4836)
		담당자	사무관	방규철 (044-203-4832)
	기술안보과	책임자	과 장	손용하 (044-203-4850)
		담당자	서기관	조부임 (044-203-4851)

□ 주요 개정사항

○ 통제품목 및 허가면제 사유 추가

구분	수출허가	상황허가
대상	모든 국가 대상	러시아, 벨라루스 등 특정국 대상
통제품목	(개정 전)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1,700여개 전략물자 ↓ (개정 후) 양자컴퓨터,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, 극저온 냉각시스템, 극저온 측정장비, 3D 프린팅, 고온코팅 등 21개 물품 및 기술 추가	변동 없음
허가면제	변동 없음	(개정 전) ¹ 정부·국제기구 지원 거래, ²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등 일부 사유 해당시 허가면제 적용 ↓ (개정 후) ³ 의료기기 거래를 허가면제 사유로 추가

□ 그밖의 개정사항

- 상위 대외무역법(‘24.2월) 및 시행령(‘24.10월)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및 용어 등 단순 수정